

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9년 5월 1일

○ 회부일자 : 2009년 5월 1일

3. 제안이유

○ 당직근무자의 당직수당을 일반 행정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 
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당직근무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○ 일·숙직 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의  
지급액을 근무1회당 5만원으로 정함 (안 제3조)

## 5. 검토의견

###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당직근무자의 근무의욕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당직근무수당을 현행 근무 1회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, 타 시·도교육청 및 충청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# 《참 고 자 료》

- 타 시·도교육청 당직비 지급 현황
  - 50,000원 : 6개 교육청(부산, 광주, 대전, 울산, 경기, 경북)
  - 40,000원 : 4개 교육청(서울, 대구, 전남, 경남)
  - 30,000원 : 5개 교육청(인천, 강원, 충남, 전북, 제주)
    - ※ 인천, 제주교육청은 2009년도 중에 50,000원으로 인상 검토 중
- 시·도 자치 단체
  - 14개 시·도 : 평일, 휴일 각 50,000원
    - 서울, 부산, 인천, 광주, 대전, 울산, 경기, 강원, 충남, 충북, 전북, 전남, 경북, 경남
    - 충청북도는 「충청북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」를 개정(2009. 4. 3. 조례 제 3136호)하여 근무 1회당 5만원 지급
  - 대구, 제주 : 평일 30,000원, 휴일 40,000원
- 청주시, 청원군
  - 청주시 : 평일, 휴일 각 50,000원
  - 청원군 : 평일 숙직 30,000원, 휴일 숙직 및 일직 50,000원

**붙 임** :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